첨 부 1 **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**

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7">기업현황</td><td>회사(업체)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대표이사명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</td><td>연락망</td><td colspan="2">(전 화)
(이메일)</td></tr>
<tr><td>사업자등록번호
(법인등록번호)</td><td colspan="3">(-)</td><td>설립일자</td><td colspan="2">'00.00.00</td></tr>
<tr><td>본사주소</td><td colspan="4">(-)</td><td colspan="2">전화 :
팩스 :</td></tr>
<tr><td>공장주소</td><td colspan="4">(-)</td><td colspan="2">전화 :
팩스 :</td></tr>
<tr><td>업 종</td><td></td><td>주생산품</td><td></td><td>표준산업
분류코드</td><td></td></tr>
<tr><td>매 출 액</td><td></td><td>종업원수</td><td></td><td>기술유출
피해경험</td><td>유/무</td></tr>
<tr><td>참여이력</td><td colspan="6">☐ 기술보호 현장자문 ('00.0.0) ☐ 기술지킴서비스 ('00.0.0)
☐ 기술보호 정책보험 ('00.0.0) 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('00.0.0)
☐ 법무지원단 ('00.0.0) ☐ 기술자료 임치 (일반/고도화,'00.0.0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담당자</td><td colspan="6">담당자 부서 : 직위 : 성명 :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연락처 전화 : 휴대폰 : E-mail :</td></tr>
<tr><td>가입경로</td><td colspan="6">☐ 온·오프라인 설명회/교육/상담 ☐ 언론·인터넷 검색
☐ 추천기관/기업(기관·기업명 :) ☐ 기타( )</td></tr>
<tr><td>해당유무</td><td colspan="6">☐ 혁신형기업(이노·메인·벤처) ☐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
☐ 혁신기업 국가대표(1000사) ☐ 글로벌 강소기업
☐ 그린뉴딜 유망기업 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
☐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☐ 소부장 강소기업
☐ 창업기업 ☐ 기타(직접기입)</td></tr>
<tr><td>첨부서류</td><td colspan="6">1-1.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서 1부.
1-2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날인본) 1부.
1-3. 최근 매출액 증빙자료(재무제표) 1부.
1-4.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(유효기간내) 1부.
1-5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.
1-6.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.</td></tr>
</table>

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 업 명 :

대 표 자 : (서명 또는 인)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

【첨부1-1】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서

□ 보유 핵심기술

□ 기술보호 활동 현황

(예시) 핵심기술 사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기술보호 전문가의 보안진단과 반기별 직원 교육, 핵심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000장비 구입·활용 등)

- 정부/기관/지자체의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이력

지원사업명	지원기관	참여년도

□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/문제점

* 해당없을 시 '해당없음'

- 기술탈취 및 유출피해경험(최근 5년 이내)

□ 추진방향과 목표

<희망하는 개별 지원사업>

희망여부 (여/부)	사업명	활용목적 및 내용
	기술보호현장자문	- 분야 : - 내용 :
	법무지원단	- 분야 : - 내용 :
	기술자료임치	- 임치건수 :
	기술보호 정책보험	- 보험물 :
	기술지킴서비스	- 희망서비스 :
	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*	- 분야 : 일반/ 고도화 - 구축내용 :

※ 개별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연계사업 지원 시 중복성 검증을 통해 지원

【첨부1-2】 기업 및 개인(신용) 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· 조회 동의서

기업 및 개인(신용) 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· 조회 동의서

대・중소기업・농어업협력재단(이하 “협력재단” 이라 한다)에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 따라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사(하)의 정보를 수집 · 제공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수집목적	▫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 및 정책 자료 활용 등
수집・이용 제공항목	▫ 기업명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설립년월일, 본점·영업소 등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연락처(주소, 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 등),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(신용거래)정보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, 부도 등), 신용능력정보, 재무상황, 고용에 관한 내역, 기타 신용정보(국세 등 체납정보),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(신용)정보 등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자료 포함 ▫ 개인식별정보, 개인신용정보,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
보유·이용 기간	▫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 지체없이 파기 * 다만,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외
개인정보 제공	▫ 제공대상 : 총괄기관(중소벤처기업부) 및 수행기관 등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▫ 제공목적 : 사전컨설팅, 수준확인 심사, 전담제 운영, 지원사업 연계 및 행사·설명회 안내 등 ▫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: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 * 상기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 거부 시 접수불가 및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SIMS) 정보활용 동의
1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(신청 및 지원) 기업정보의 수집・조회 및 활용 2.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(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), 고용정보(고용보험법 제2조의1), 직장가입자 수(국민건강보험법 제6조) 등 3.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서 조회·활용 4.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※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?	**동의함** ☐ **동의하지 않음** ☐
※ 귀사(하)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

202 년 월 일

기업명		대표자	(인)
사업자등록번호	-	연락처	( ) -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

참고 **우대가점 제출서류**

□ 우대가점 제출서류(최대 10점)

분야	우대사항	가점	증빙서류
일 반	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	1점	피해사실 입증공문 또는 기타 입증가능 서류
	「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3조 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	1점	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서(정부24)
	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5조제1항8호에 따르는 환경산업체 및 이노비즈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따르는 "그린뉴딜 유망기업"	1점	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
	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기업	1점	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
	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18조의2(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)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), 제18조(세계적 유망기업 육성)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(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)에 따르는 혁신기업	1점	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인증서
	「방위사업법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르는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	1점	방산업체 지정서
	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2조, 제14조의3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5에 따라산업기술(국가핵심기술에 해당)을 확인받은 기업	1점	산업기술(국가핵심기술)확인서
	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에 따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	1점	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혁신형	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	5점	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	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	5점	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
	「벤처기업법」 제2조의2 1항의 2호의 가목에 따르는 벤처인증기업	5점	벤처기업 확인서
창업기업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	5점	창업기업 확인서 등